유튜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와 판단기준

1. 서설

2019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결과 초등학생의 희망직업으로 “유튜버 크리에이터”가 3위에 올라와 있듯이 최근 성인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튜버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만약 퇴근 후 유튜버로 활동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는 징계를 할 수 있는지와 무엇을 징계사유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2. 관련 법규

1) **헌법 제15조** 모든 국민은 **직업선택의 자유**를 가진다.

2) **근로기준법 제5조(근로조건의 준수)**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,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**성실하게 이행할 의무**가 있다.

3.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

1) **겸직 금지 부당 : 서울행법 2001구7465, 2001.07.24. 선고**

“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,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**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,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.**”

2) **겸직 징계 가능 : 서울행정법원 2000구22399, 2001.02.15. 선고**

"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,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**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당연 면직시킬 수 있다**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."

3) 비밀누설 해고정당 : 서울고등법원 2013.6.28. 선고 2012누3534

"원고가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 처 명의로 개인기업을 설립해 회사의 사업목적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한 사안에서, 원고는 처와 공동명의로 논문을 발표해 위 개인기업을 홍보하고 이익을 도모한 점, 논문에 포함된 설계보고서 및 실험보고서는 **회사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점,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개인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비밀을 누설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는 정당하다.**"

4) 겸직금지 규정 효력 : 행정해석(근로기준팀-5759, 2007.08.03.)

"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**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,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,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**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**'이중 취업금지규정'은 그 효력이 인정**될 수 있다."

4. 유튜버로 겸직(업)시 징계 가능 여부

1) 원칙

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자유로이 유튜버로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

2) 예외

다만,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조(근로조건의 준수)에 따라 취업규칙, 근로계약서 상의 규정과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할 신의성실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불성실한 근무를 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겸직 또는 겸업금지규정을 두고 있거나 겸직(겸업)을 할 경우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. 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겸직(겸업)을 하는 경우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5. 유튜버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기 위한 판단기준

1) 취업규칙, 근로계약서 상에 신의성실 근로제공의무를 규정하거나 겸직(겸업)금지 규정 또는 겸직(겸업)시 회사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 실시한다. 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

2) 유튜버 활동으로 인하여 지각, 결근, 조퇴 등 근태 불량상황이 자주 발생하거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

3) 유튜버 방송 시 회사의 영업비밀(정보)를 활용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

6. 결어

유튜버의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징계대상이 되지 않지만 신의성실원칙, 겸직금지 규정, 근태불량, 영업비밀정보누설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튜버로 어떠한 내용의 방송을 하는지 이로 인해 회사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정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끝.

제354호

2020.07.13.

노무법인 두레